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중등순회교사 3명을 감원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 56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61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237명(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원장 10명 및 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18명을 감축하며,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3명 및 교감 8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2,424명을 감축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두는 교장 28명 및 교감 35명을 각각 증원하면서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공립의 각급 학교에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0명(교사 500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립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07명(교사 1,3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별표의 특수교사 관련 단서 표시방식을 교사 자격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특수교사’로 표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을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21”을 “2,674”로 하고, 교사 계 “2,601”을 “2,654”로 하며, 중등순회교사 “47”을 “44”로 하며, 특수교육순회교사 “1,716”을 “1,772”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885명(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8명,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24명,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2,4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34,746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811
원장	594
원감	1,012
교사	13,205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4,146
교장	6,057
교감	6,190
교사	131,899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36,329
교장	3,927
교감	3,703
교사	128,699
특수학교 계	17,625
교장	101
교감	128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17,396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21,835
보건교사	9,075
영양교사	6,880
사서교사	1,660
전문상담교사	4,220

[별표 3]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

1.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00
교사	500

2.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총계	50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500
교사	500

3.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2월 28일)

총계	1,3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24
교사	624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83
교사	683

4.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총계	1,30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24
교사	624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683
교사	68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u> 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제4조(한시정원) ① ----- ----- ----- ----- -- <u>별표 3</u> ----- ----- -----.
②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3</u> 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② ----- ----- ----- ----- ----- <u>별표 3</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21</u>	<u>2,674</u>	+53
교사 계	<u>2,601</u>	<u>2,654</u>	+53
중등순회교사	<u>47</u>	<u>44</u>	-3
.	.	.	
특수교육순회교사	<u>1,716</u>	<u>1,772</u>	+5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